

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

의안
번호

2019-108

제출일자 : 2019. 9.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가.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.(1년간)

– 2016. 1. 1.~2019. 12. 31.(4년)마치고 재협약 하기 위함

나. 2017년 행정사무감사 김종두 의원 제안사항으로 월성창의우주과학관, 국민여가캠핑장과 위탁기간을 통일하기 위함

(※ 월성창의우주과학관, 국민여가캠핑장 : 2020.12.31. 계약만료)

2. 시설현황

가. 시 설 명 :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(청소년수련시설)

나.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.(1년간)

다. 개 원 일 : 2001. 5. 20.

라. 근무인원(상시) : 4명(원장1, 사무국장1, 팀장1, 영양사1)

마. 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바. 시설규모

– 부 지 : 96,912㎡(29,315평, 대지 46,426㎡, 임야50,486㎡)

– 건 평 : 건축면적 1,544.04㎡, 연면적 3,945.03㎡(지하1층, 지상3층)

구분	면적(㎡)	주 요 시 설	비고
계	3,420.85	지하 1층, 지상3층	본관
지하	871.86	식당, 보일러실, 기계실, 전기실	
1층	1,143.54	사무실, 강의실(2곳), 숙소(10실), 준비실, 원장실	
2층	1218.7	강당, 강의실, 숙소(8실)	
3층	186.75	지도자숙소(5실)	

사. 예산지원 : 22,320천원(청소년배치지도사 1명 인건비 지원)

3. 운영 현황

- 가. 수탁운영 관리자 : (사)거창흥사단
- 나. 최초위탁 : 2000. 12. 28. ~ 2003. 12. 27.(3년간)
- 다. 1차 계약갱신 : 2003. 12. 28. ~ 2006. 12. 31.(3년 4일)
- 라. 2차 계약갱신 : 2007. 1. 1. ~ 2009. 12. 31.(3년간)
- 마. 3차 계약갱신 : 2009. 1. 1. ~ 2012. 12. 31.(3년간)
- 바. 4차 계약갱신 : 2013. 1. 1. ~ 2015. 12. 31.(3년)
- 사. 5차 계약갱신 : 2016. 1. 1. ~ 2019. 12. 31.(4년)

4. 계약갱신에 따른 추진절차

- 가. 군의회 동의 : 2019. 9월
- 나. 재위탁 신청서 접수 : 2019. 10. 1. ~ 10. 4.
- 다.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: 2019. 10. 8. ~ 10. 14.
- 라. 선정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발표 : 2019. 10. 16. ~ 10. 22.
- 마.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: 2019. 11월 중

5. 참고자료

- 가. 수탁자격 :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(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)
- 나. 위탁사무 및 조건
 - 월성청소년수련원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
 - 월성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
 - 위탁대상 시설의 개.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
 - 관련법규 준수 의무
- 다. 관계법령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 -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 -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 -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(운영) 및 제6조(위탁운영)

참 고 자 료

청소년이용시설 위탁운영 근거법령 및 조례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】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.>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.>
 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2.4., 2015.1.20.>
 -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2.4., 2015.1.20.>
 -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 -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 -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 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 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 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 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 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[전문개정 2008.12.26.]

【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】

제1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2항·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-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.

【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】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
-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 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6.12)
-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-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(개정 및 후단신설 2013.6.12)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【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】

제6조(위탁운영)

-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 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